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

금 융 감 독 원

수신　　수신처 참조
(경유)
사본수신
제목　　**즉시결제서비스업무 취급현황 조사관련 협조요청**

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원은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'대부업체 등의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즉시결제서비스' 취급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3. 귀 회원사중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(유사형태의 서비스 포함)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<붙임>양식에 따라 회사별 현황을 작성·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◦ 제출기한 : 2015. 1. 15.(목)
◦ 제출방법 : 팩스(02-3145-7559) 및 이메일(jshong@fss.or.kr)

붙　임　조사 양식 1부. 끝.

금융감독원장

수 신 처　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, 한국지급결제대행(PG)협회 회장, 한국신용카드VAN협회 회장,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장

담당부서　상호여전감독국 (여전감독총괄팀)
선임조사역　**홍진섭**　　팀장　**황동하**　　국장　전결 2015.01.08. **오홍석**
합의자
시행　상감총괄-00004　(2015.01.08.)

우　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　/　http://www.fss.or.kr
전화번호　3145-7557　팩스번호　3145-7559　/　jshong@fss.or.kr　/ 비공개(5)

(붙임)

【카드가맹점 대상 즉시결제서비스관련 조사내용】(업체용)

<작성자 연락처>

업체명	직 위	성 명	연 락 처

◈ 즉시결제서비스 기본 체계

- ○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매출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통상 매출당일 매출채권을 담보 등으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("즉시결제서비스")
- ○ 동 서비스 제공업체는 카드가맹점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1~1.5%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매출채권 대금을 카드가맹점에 제공

1. 귀 사는 즉시결제서비스 대출을 영위중에 있는지?

2. 동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귀사의 영위업종(主업종)은 무엇인지

(예: 대부업, 여전업 등)

주) 별도의 인허가등록없이 VAN관련 업무 등을 영위시에도 구체적 업무 등을 명기

<이하 동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해서 작성>

3. 귀 사가 취급하고 있는 '즉시결제서비스'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

주) 즉시결제서비스 취급절차 등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대출목적 및 성격 등이 유사하다면 작성 요망

① 즉시결제서비스(대출) 취급일과 카드사로부터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평균소요기간 (예: 매출당일(D일) 대출을 취급하여 D+3일후 카드사로부터 회수)

② 즉시결제서비스의 대출 한도, 평균 대출기간, 수수료 등 거래조건
[예: 매출채권의 90% 범위내에서 대출,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 상환, 결제 대금의 1.5% 수수료(결제 기준일자 및 명목별 수수료 세분화*) 수령 등]
* 예: 즉시결제수수료(0.5%) + 정산수수료(1.0%) = 1.5% (3일간)

③ 즉시결제서비스 과정에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 보전방법 (예: 매출채권을 계약을 통해 일괄 양도, 가맹점 예금계좌 질권 설정 등)

④ 즉시결제서비스의 취급 근거가 되는 매출채권정보를 제공받는 범위 및 제공받는 방법 (예: 가맹점으로부터 ID와 Password를 넘겨받아 VAN사 홈페이지에서 업체가 직접 조회 등)

⑤ 즉시결제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대출금 회수방법 (예: 차주가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귀 사로 입금 등)

⑥ 즉시결제서비스 취급 실적

(단위 : 백만원, 건)

구 분	즉시결제서비스 취급 규모		거래업체수 및 주요 거래업체명	채권보전방법 (담보 등*)
	건 수	대출금액		
2012년				
2013년				
2014년				

* (예) 카드매출채권 등을 양도담보 형식으로 제공 등

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.